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483호 2019. 12. 2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83호 2019. 12. 2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58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6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6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향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3호 폐기 및 등록 공인 공고 10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로,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보험·

공제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인감관련업무”를 “인감 관련 업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보험”을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직위당”을 “1직위 당”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를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을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u></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 -----.</p> <p>1. <u>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u> <u>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 -----.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 -----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6.·7. (생략)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서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서구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서구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서구 전역을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서구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 기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구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

② 서구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제4조(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범위) 서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지원
5. 학생들을 위한 마을방과 후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부담) 서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서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구청과 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공동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교부조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서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구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서구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
 되 당연직 위원은 서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
 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
 장이 위촉한다.

가. 서구의회 의원

나. 서구 초·중·고 학교장

다. 서구 초·중·고 학부모

라. 서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
 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서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서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

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회의 주관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수료 및 사용료

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후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40원	80원	1매당
	B4	50원	100원	

2.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금액(원)	비 고
어울림터(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평일·주말	20,000	①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② 휴관일 제외 ③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3. 사물함 사용료 : 월 3,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후단 중 “참여할지”를 “참여하지”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으로 한다.

제12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이란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

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상위계층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 복지대상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내지 제5조의”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 중 “축하금 지원 신청대장”을 “출산·입양축하금 등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축하금”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하금”을 “제1항에 따라 축하금 등”으로, “지원 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내용란 중 “차상위계층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출산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구청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을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한다.

1. 문화관광체육과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처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은 이 처리기준 시행일 기준의 기존에 허가된 장소 및 면적으로 한다.

제4조(점용허가 갱신)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점용허가 기간 이후에도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시 별표 1의 허가조건을 허가증과 함께 발급하여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제외)
2.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포기한 경우
3.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6조(점용허가권자의 자격) 수허가자가 사망, 서구 외 지역으로의 전출, 수허가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려는 자의 자격은 수허가자의 자격 변경일(사망일, 타 지역 전입일, 자격상실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7조(점용허가권 양도·양수) ① 점용물의 소유권이 서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허가자 신분변동으로 점용물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수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비속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2.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허가를(사망은 사후 30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점용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점용물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2. 점용물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갱신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허가증 등을 갱신 처리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운영자의 행위 금지)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공약품, 음란서적·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2.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훼손할 수 없다.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5.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7. 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9.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관리현황을 전자파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변경 등 정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3.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스스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시설물 철거)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 가 조 건

1. 운영자 준수사항

운영자(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도로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 다.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으며, 연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라. 구청장이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화공약품, 음란서적·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 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 사.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훼손할 수 없다.
- 아.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 자.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일시 적치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차.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 카. 도로점용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파.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하.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자는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허가 취소

운영자의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

위반행위	비고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변경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점용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미납부 .구청장의 시설물 위치 조정 및 교체 요구 거부	1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별지 제1호]

서 약 서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점용장소:

점용면적: m²

위 본인은 귀청으로부터 도로상 영업시설물을 허가받음에 있어 각종 허가조건(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취소, 행정대집행 등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 ③ 재난현장에 현장대응반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의 관할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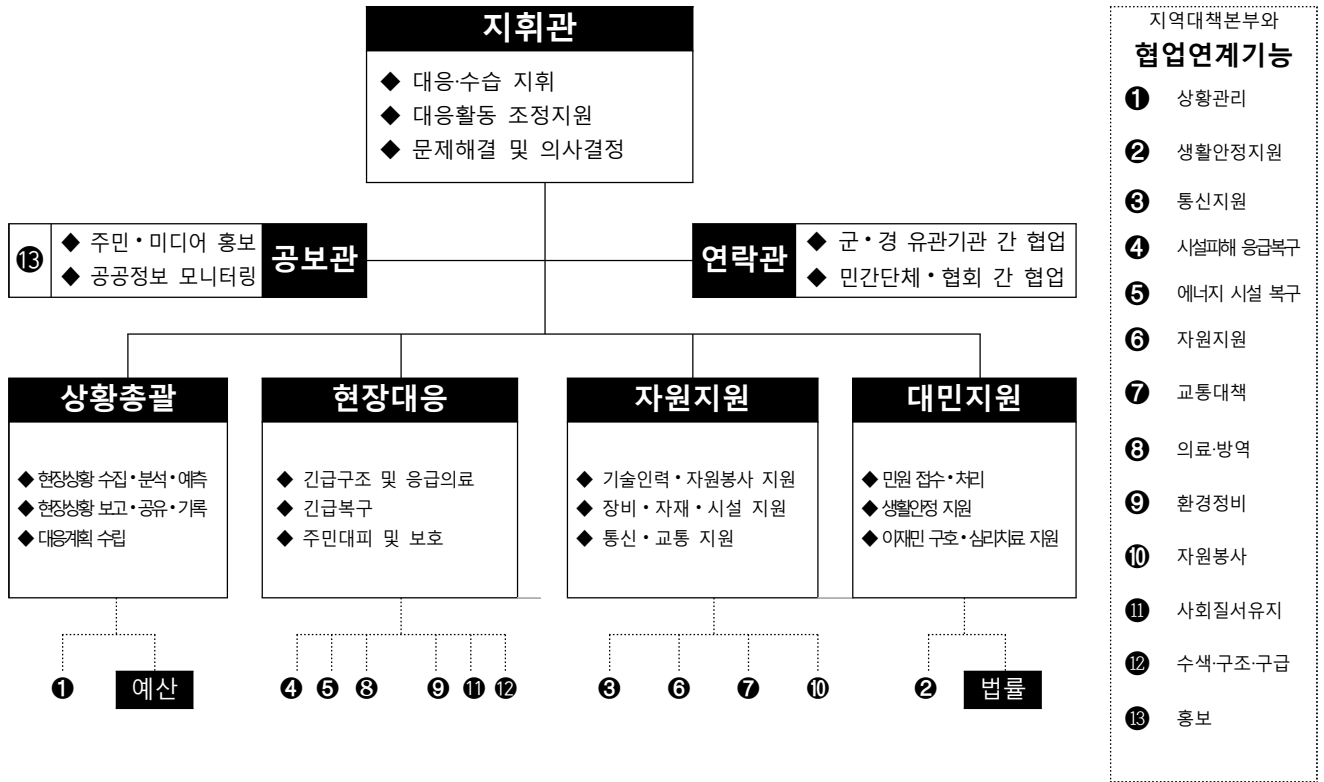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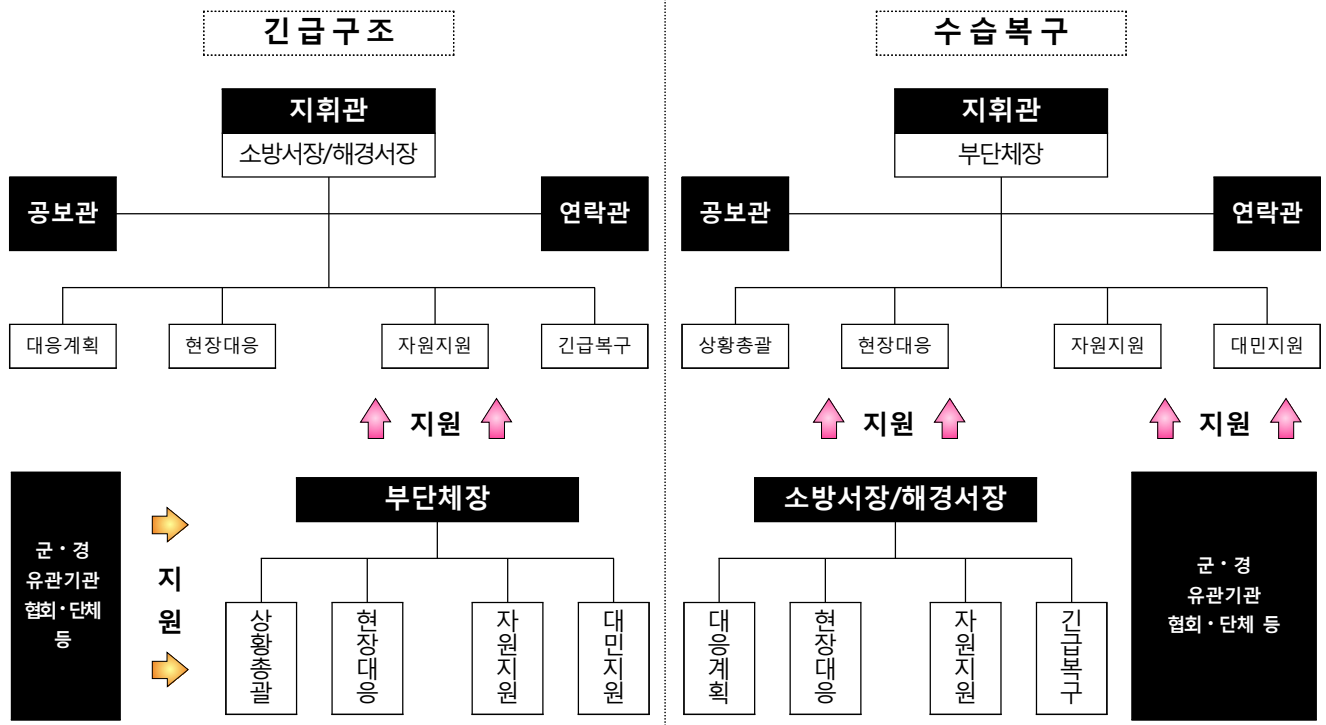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지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 보고
현 장 대 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 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 지원 • 현장대응 자원 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 지원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 지원 • 장례 지원 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

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

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령자 및 준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조화로운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고령자, 준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또는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정서진1로 10 외 3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2.2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2-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1-5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전1로 10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영소 정서전 명칭을 반영한 정서전로에서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38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단지로 140 (원창동)	20190121	목항배후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6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52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6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50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6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48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향일동 64-24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8번길 47 (향일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동 133-24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38 (향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4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98번길 29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77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16-11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61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8번길 28 (가좌동)	20090706	장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62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8번길 30 (가좌동)	20090706	장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19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로206번길 26 (원창동)	20131202	목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동 63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향내로174번길 5 (향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15-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31-2 (가좌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12-2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721-40 (마전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83-1 (원당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83-4 (원당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83-35 (원당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41-31 (원당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6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05-91 (마전동)	건축물대장 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7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605-5 (당하동)	건축물대장 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8	인천광역시 서구 고신후로 32-24 (당하동)	건축물 대장 말소	20081231	고신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193-97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193-1 (마전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1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서곶으뜸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22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서곶으뜸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28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서곶으뜸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50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서곶으뜸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2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서곶으뜸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77번길 26-8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77번길 26-2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77번길 26-4 (불로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7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고신후로78번길 19 (당하동)	건축물 대장 없음	20081231	고신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가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2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9. 12. 23.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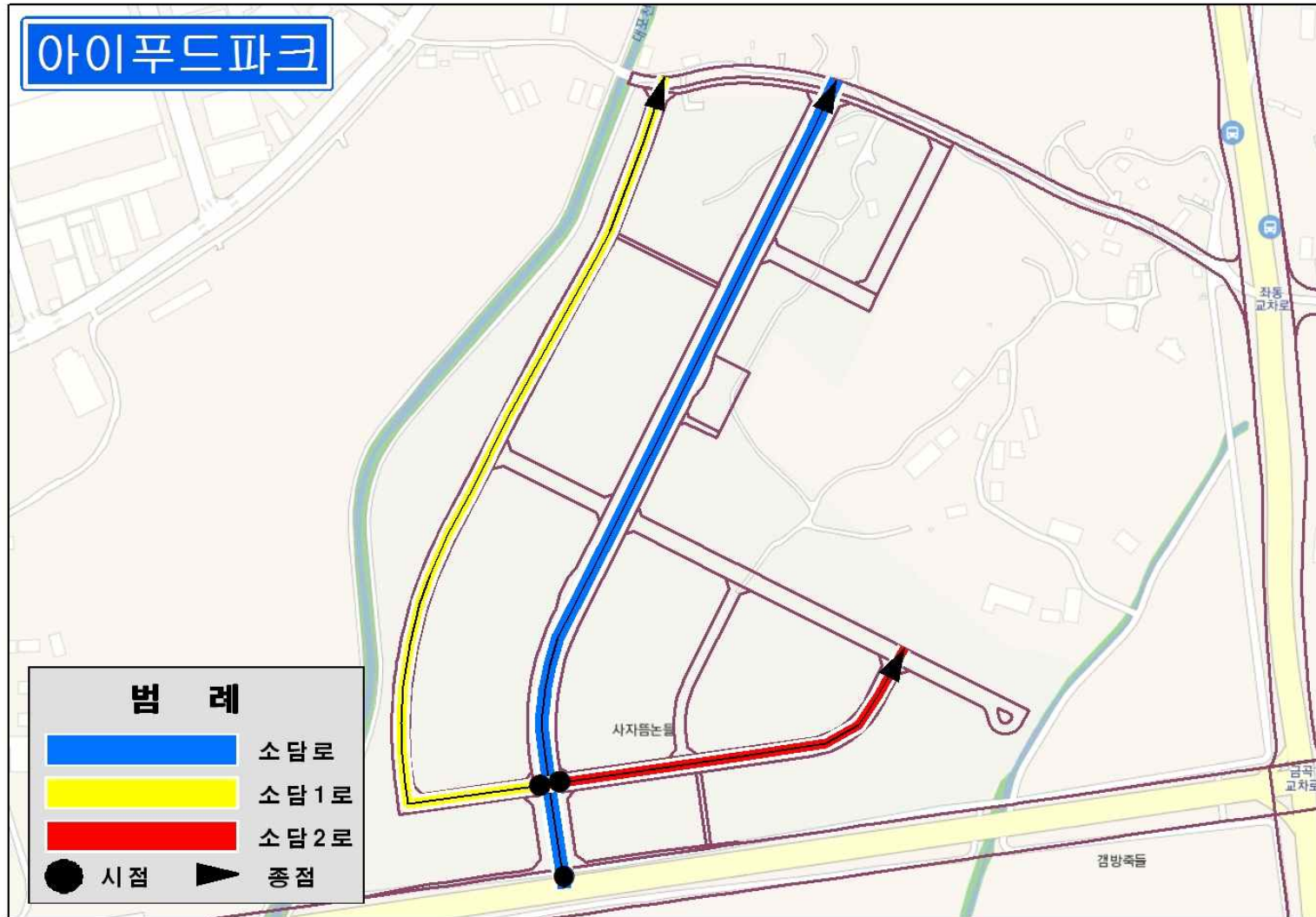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연번	도로 구분	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소담로	금곡동	451-4	금곡동	479-2	710	24	20	검단동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순 우리말에서 착안
2	로	소담1로	금곡동	452-16	금곡동	476	760	15	20	검단동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3	로	소담2로	금곡동	452-15	금곡동	439	320	15	20	검단동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4	로	첨단기술로	청라동	1-1394	청라동	1-1219	1991	20	20	청라2동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5	길	중봉대로406번길	원창동	196-13	원창동	196-2	319	10	20	신현원창동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길	봉오대로268번길	가정동	산 87-1	가정동	571-2	281	20	20	가정2동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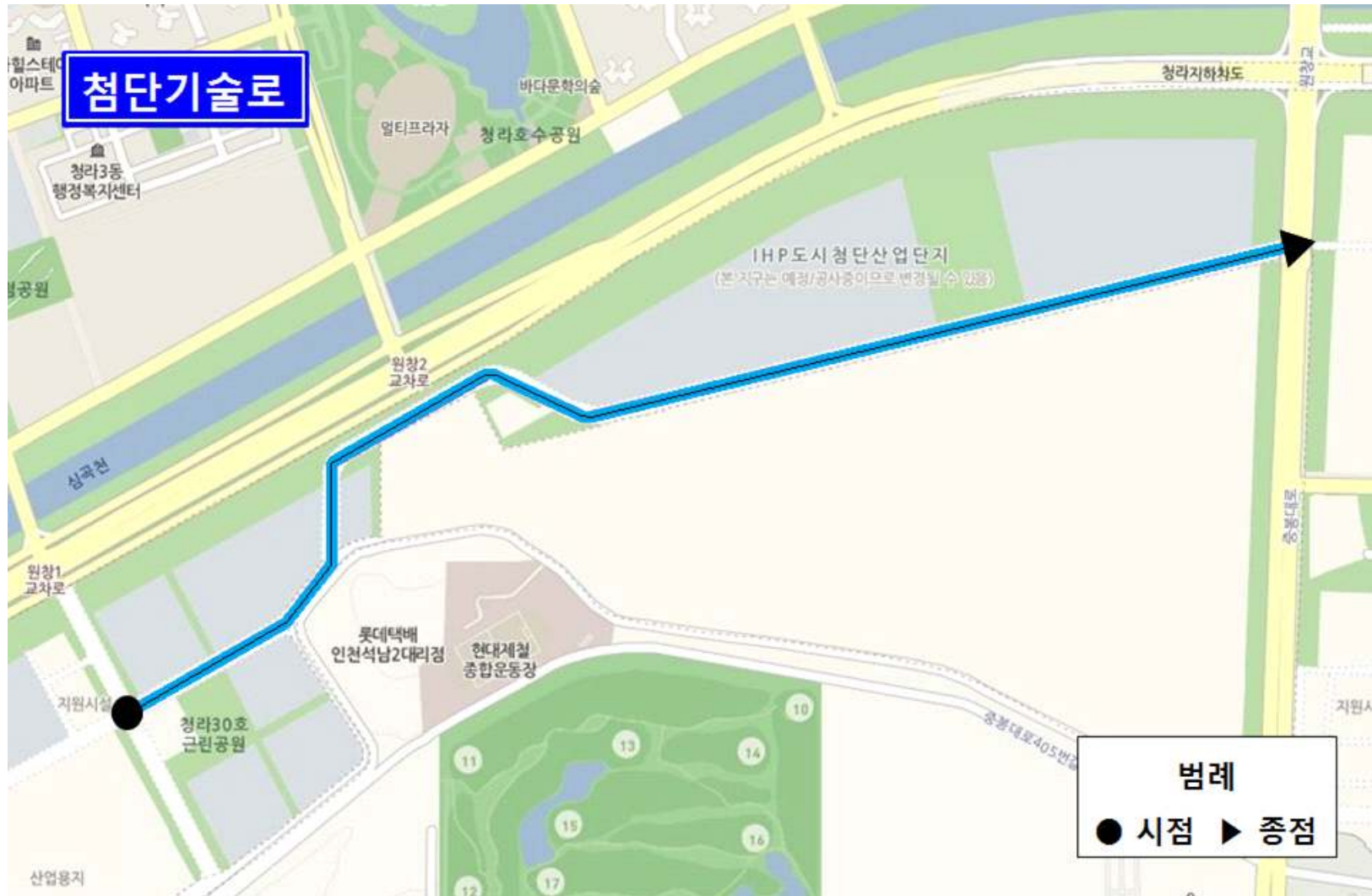
○ 도로명주소 안

1) 소담로, 소담1로, 소담2로



○ 도로명주소 안

2) 첨단기술로



- 도로명주소 안
- 3) 중봉대로406번길



○ 도로명주소 안

4) 봉오대로268번길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9 - 24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원창동 379-1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북항배후부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2,092,933.2	증145.6	2,093,078.8	인고 제2006-237호 (2006.12.18.)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북향배후부지	○ 면적변경 ○ 위치 : 1-8가구(원창동 379-1) ○ 면적 : 62,946㎡→63,091.6㎡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3	17,854	393,018.4	10	6,115	180,769.7	31	11,079	190,170.7	2	660	22,078.0
광로	1	487	19,955.8	-	-	-	-	-	-	1	487	19,955.8
대로	8	5,292	180,391.5	4	3,101	113,094.9	4	2,191	67,296.6	-	-	-
중로	30	11,508	187,906.1	5	2,901	66,541.8	24	8,434	119,242.1	1	173	2,122.2
소로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광로	3	3	40 (40~46)	주간선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인고158 (06.9.11)	()는 구역내
	대로	1	7	35 (35~41)	보조간선도로	3,100 (574)	광1-14	대1-17	일반도로	-	인고1386 (1988.9.23)	()는 구역내
	대로	1	14	30~36	보조간선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인고13 (05.1.25)	()는 구역내
	대로	1	16	35 (35~41)	주간선도로	1,528 (984)	광2-4	대 3-92	일반도로	-	건고 54 (70.2.9)	()는 구역내
	대로	1	17	35 (35~40)	주간선도로	2,307 (554)	원창동 395	원창동 광3-3	일반도로	-	인고 158 (06.9.11)	()는 구역내
	대로	2	29	30 (30~34)	보조간선 도로	4,250 (267)	대2-32	대1-14 (하수처리장)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2	37	30	국지도로	1,085 (764)	대1-17	원창동 395-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2	40	3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울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 2016-290 (2016.11.21)	
	중로	1	1	20	집산도로	803	대1-7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2	20	집산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3	20	집산도로	578	광3-3	대1-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4	20	집산도로	970	대1-7	대2-40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5	20	국지도로	550	대1-14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4-50 (2014.03.10.)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대1-16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62	대1-14	중2-8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3	15	국지도로	265	대1-14	중2-4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4	15	국지도로	311	중2-7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5	15	국지도로	167	중2-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3	중2-7	중2-5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7	15	집산도로	442	대1-1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대1-7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9	15	국지도로	197	중2-2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11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12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900	15	국지도로	266	대1-14	중2-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중로	2	901	15	집산도로	225	대1-16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중로	2	902	15	국지도로	172	중2-1	중2-90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중로	2	910	15	국지도로	455	대2-29	중2-920	일반도로	-	인고 2016-290 (2016.11.21)	
	중로	2	918	15	국지도로	350	대2-40	중1-4	일반도로	-	인고 2014-169 (2014.07.28.)	
	중로	2	919	15	국지도로	353	대2-40	중1-4	일반도로	-	인고 2014-169 (2014.07.28.)	
	중로	2	920	15 (15~20)	국지도로	232	중1-1	석남동 342-13	일반도로	-	인고 2016-123 (2016.06.07)	
	중로	2	928	15	국지도로	600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29	15	국지도로	283	대2-116	중2-928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0	15	국지도로	272	대2-116	중2-928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1	15	국지도로	124	구역경계	대2-116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2	15	국지도로	130	구역경계	대2-116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3	15	국지도로	124	중2-5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3	1	12	국지도로	173	중2-7	중2-3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소로	1	1	10	특수도로	113	광2-4	중2-2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소로	2	1	8	국지도로	291	중2-901	중2-90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소로	2	2	8	국지도로	82	중2-901	소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소로	2	3	8	국지도로	81	중2-901	소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주차장	원창동 381-1번지 일원	5,642	인고 2012-5 (2012.01.16.)	
	2	주차장	원창동 381-2번지 일원	1,300	인고 2012-5 (2012.01.16.)	
	3	주차장	원창동 381-3번지 일원	782	인고2016-6 (2016.01.18.)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제1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14,210.8	인고 2012-5 (2012.01.16.)	
	2	제2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76,368.2	인고 2012-5 (2012.01.16.)	
	3	제3공원	소공원	원창동 381-4번지 일원	469	인고2016-6 (2016.01.18.)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녹지	완충녹지	석남동 642-4번지 일원	22,954.6	인고 2012-5 (2012.01.16.)	
	2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1-1번지 일원	1,210.6	인고 2012-5 (2012.01.16.)	
	3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79-1번지 일원	9,741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659㎡)
	4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8번지 일원	16,912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7,727㎡)
	5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92번지 일원	16,109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1,857㎡)
	7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1-3번지 일원	1,922	인고2016-6 (2016.01.18.)	
	1	녹지	경관녹지	석남동 642-75번지 일원	6,905.6	인고2016-290 (2016.11.21.)	
	2	녹지	경관녹지	석남동 642-76번지 일원	3,833	인고2016-290 (2016.11.21.)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원창동 196-7번지 일원	441,514 (25,428)	인고 122 (99.9.30)	()구역내 면적, 녹지 3,4,5와 중복결정 (10,243㎡)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원창동 379번지 일원	141,246.7	인고 제95-6호 (95.01.12.)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번지 일원	3,443.1	인고2012-5 (2012.01.16.)	
	2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23번지	3,445.9	-	소방서
	3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25번지	1,756.3	-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1	사회복지시설	원창동 381-124번지	1,755.2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있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 공업용지(변경있음)

[변경 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1획지 37필지	895,388.3	
I	I -1(1)	61,684.4	1	17,293.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21,771.1	
			3	22,619.9	
	I -1(2)	23,041.1	1	11,393.9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1,647.2	
	I -1(3)	54,590.5	1	12,502.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02.0	
			3	15,034.0	
			4	14,552.1	
	I -1(4)	52,822.2	1	12,581.7	
			2	12,581.3	
			3	14,073.9	
			4	13,585.3	
	I -1(5)	50,386.8	1	12,502.1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01.7	
			3	12,932.4	
			4	12,450.6	
	I -1(6)	24,267.5	1	12,005.9	
			2	12,261.6	
	I -1(7)	25,187.6	1	12,466.6	
			2	12,721.0	
I -2(1)	51,290.4	1	14,048.0		
		2	16,891.1		
		3	20,351.3		
I -2(2)	93,933.2	1	18,017.2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8,936.8		
		3	8,899.6		
		4	18,520.8		
		5	13,200.5		
		6	12,937.4		
		7	13,420.9		
I -2(3)	41,735.0	1	14,383.5		
		2	13,620.7		
		3	13,7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	필지	비 고
				면적(m ²)		
I	I-3	21,846.8	1	3,360.8		
			2	3,360.8		
			3	3,360.8		
			4	3,387.2		
			5	3,387.2		
			6	4,990.0		
	I-4	31,793.0	1	3,992.1	-	-
			2	3,975.1	-	-
			3	3,963.8	-	-
			4	3,969.3	-	-
			5	3,983.6	-	-
			6	3,976.7	-	-
			7	3,964.1	-	-
			8	3,968.3	-	-
	I-5	27,133.1	1-1	3,388.85	-	-
			1-2	3,388.85	-	-
			2-1	3,399.05	-	-
			2-2	3,399.05	-	-
			3	6,770.3	-	-
			4-1	3,393.50	-	-
	I-7	79,177.9	1	59,913.7	-	-
			2	-	19,264.2	주1,3) 필지 분할 가능
	I-8	62,946	1	62,946	-	-
	I-9	15,961	1	1,438	-	-
			2	1,416	-	-
			3	1,395	-	-
			4	1,373	-	-
			5	1,352	-	-
			6	1,331	-	-
			7	1,309	-	-
			8	1,288	-	-
			9	1,266	-	-
10			1,245	-	-	
11			1,223	-	-	
12			1,325	-	-	
I-9	32,915.2	구체적인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의 결과에 따름			북향목재단지	
I-10	22,989.5					
I-11	19,582.7					
I-12	12,454.0					
I-13	5,391.7					
I-14(1)	56,460.3	1	-	56,460.3	주2,3) 필지 분할 가능	
I-14(2)	27,798.4	2	-	27,798.4		

- 북향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규모 (신설)2,400㎡(주1) 이상
- 주1) I-7-2 필지는 분할조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I-1(1)~1(7), I-2(1)~2(3), II-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3)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목재단지 단서조항

구 분	최소 획지규모	비 고
공업용지 (I-9, I-10)	2,4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공업용지 (I-11, I-12, I-13)	1,6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주2) 무분별한 필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분할요건 : 최소획지규모 이상, 세장비 1:1~2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 형태, 1면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제외)에 모두 만족할 경우

주3) 필지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합병만 허용함

○ I-1(1)~1(7), I-2(1)~2(3), I-7-2, I-14(1), I-14(2)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변경 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1획지 37필지	895,388.3	
I	I -1(1)	61,684.4	1	17,293.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21,771.1	
			3	22,619.9	
	I -1(2)	23,041.1	1	11,393.9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1,647.2	
	I -1(3)	54,590.5	1	12,502.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02.0	
			3	15,034.0	
			4	14,552.1	
	I -1(4)	52,822.2	1	12,581.7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81.3	
			3	14,073.9	
			4	13,585.3	
	I -1(5)	50,386.8	1	12,502.1	
			2	12,501.7	
			3	12,932.4	
			4	12,450.6	
	I -1(6)	24,267.5	1	12,005.9	
			2	12,261.6	
	I -1(7)	25,187.6	1	12,466.6	
			2	12,721.0	
I -2(1)	51,290.4	1	14,048.0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6,891.1		
		3	20,351.3		
I -2(2)	93,933.2	1	18,017.2		
		2	8,936.8		
		3	8,899.6		
		4	18,520.8		
		5	13,200.5		
		6	12,937.4		
		7	13,420.9		
I -2(3)	41,735.0	1	14,383.5		
		2	13,620.7		
		3	13,7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	필지	비 고
				면적(m ²)		
I	I-3	21,846.8	1	3,360.8		
			2	3,360.8		
			3	3,360.8		
			4	3,387.2		
			5	3,387.2		
			6	4,990.0		
	I-4	31,793.0	1	3,992.1	-	-
			2	3,975.1	-	-
			3	3,963.8	-	-
			4	3,969.3	-	-
			5	3,983.6	-	-
			6	3,976.7	-	-
			7	3,964.1	-	-
			8	3,968.3	-	-
	I-5	27,133.1	1-1	3,388.85	-	-
			1-2	3,388.85	-	-
			2-1	3,399.05	-	-
			2-2	3,399.05	-	-
			3	6,770.3	-	-
			4-1	3,393.50	-	-
	I-7	79,177.9	1	59,913.7	-	-
			2	-	19,264.2	주1,3) 필지 분할 가능
	I-8	63,091.6	1-1	29,862.8	-	-
			1-2	33,228.8	-	-
	I-9	15,961	1	1,438	-	-
			2	1,416	-	-
			3	1,395	-	-
			4	1,373	-	-
			5	1,352	-	-
			6	1,331	-	-
			7	1,309	-	-
			8	1,288	-	-
			9	1,266	-	-
			10	1,245	-	-
			11	1,223	-	-
			12	1,325	-	-
I-9	32,915.2	구체적인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의 결과에 따름			북향목재단지	
I-10	22,989.5					
I-11	19,582.7					
I-12	12,454.0					
I-13	5,391.7					
I-14(1)	56,460.3					1
I-14(2)	27,798.4	2	-	27,798.4		

- 북향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규모 (신설)2,400m²(주1) 이상
- 주1) I-7-2 필지는 분할조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I-1(1)~1(7), I-2(1)~2(3), II-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3)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목재단지 단서조항

구 분	최소 획지규모	비 고
공업용지 (I -9, I -10)	2,4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공업용지 (I -11, I -12, I -13)	1,6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 주2) 무분별한 필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분할요건 : 최소획지규모 이상, 세장비 1:1~2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 형태, 1면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제외)에 모두 만족할 경우
- 주3) 필지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합병만 허용함

○ I-1(1)~1(7), I-2(1)~2(3), I-7-2, I-14(1), I-14(2)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8	1 → 1-1,1-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22필지	104,833.7	
II	II-1	16,595.7	1	16,59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II-2	16,323.8	1	4,16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4,142.4	
			3	1,082.8	
			4	6,932.9	
	II-3	71,914.2	1	6,100.1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6,292.1	
			3	9,531.8	
			4	9,559.3	
			5	3,379.2	
			6	1,534.7	
			7	91.3	
			8	1,515.0	
			9	2,850.8	
			10	4,457.0	
			11	456.0	
			12	3,046.0	
13			6,612.0		
14	2.7				
15	8,079.9				
16	3,506.2				
17	4,900.1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II-1~3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단변과 장변의 비(1:1~3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 분할 가능(단, 소규모 필지를 3,500m ² 이상으로 합병하기 위한 분할은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m ²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소규모(3,500m²이하) 필지: 원창동 388-6, 388-8, 388-9, 395-9, 395-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6필지	99,497.0	
II	II-4	99,497	1	16,563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16,626	
			3	16,579	
			4	16,584	
			5	16,572	
			6	16,573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II-4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m ²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6필지	97,839.3	
II	II-5	97,839.3	1	16,633.5	필지 분할 가능
			2	16,521.5	
			3	16,568.8	
			4	15,976.7	
			5	16,029.1	
			6	16,109.7	

- 주1)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II-5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m ²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54획지	147,500.2	
III	III-1	8,390.7	1	2,028.9	
			2	2,151.2	
			3	2,048.9	
			4	2,161.7	
	III-2	11,907.5	1	1,485.9	
			2	1,551.6	
			3	1,726.4	
			4	1,786.0	
			5	1,232.6	
			6	1,255.0	
			7	1,419.0	
			8	1,451.0	
	III-3	13,843.6	1	1,819.5	
			2	1,817.1	
			3	2,099.5	
			4	2,027.1	
			5	1,462.5	
			6	1,353.9	
			7	1,713.0	
			8	1,551.0	
	III-4	13,991	1	1,380	
			2	1,379	
			3	1,404	
			4	1,391	
			5	1,417	
			6	1,391	
			7	1,430	
			8	1,391	
			9	1,426	
			10	1,382	
	III-5	13,281	1	1,501	
			2	1,471	
			3	1,525	
			4	1,455	
			5	1,525	
			6	1,406	
			7	1,525	
			8	1,357	
			9	1,516	
	III-6	8,534	1	2,000	
2			2,077		
3			2,196		
4			2,261		
III-7	67,030.5	1	10,964.0		
		2	11,738.0		
		3	15,367.5		
		5	7,171.0		
		6	7,121.0		
		7	6,956.0		
		8	7,713.0		
		1	2,556.2		
III-8	10,521.9	2	2,769.0		
		3	2,541.0		
		4	2,655.7		

■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2획지	1,837	
IV	IV-1	1,837	1	1,137	
			2	700	

■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4획지	10,400.5	
V	1	10,400.5	381-39	3,443.1	
			381-123	3,445.9	
			381-125	1,756.3	
			381-124	1,755.2	

□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획지	7,724	
V	2	5,642	1	5,642	
V	3	1,300	1	1,300	
V	5	782	1	782	

□ 유통 및 공급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1획지	98,340	
V	4	98,340	1	98,340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141,246.7m²) 결정면적과 획지 면적차이는 송유관로(42,906.7m²) 면적에 의한 차이임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5획지	7,947	
VII	VII-1	1,124	1	218	
			2	224	
			3	226	
			4	226	
			5	230	
	VII-2	2,289	1	230	
			2	230	
			3	230	
			4	230	
			5	226	
			6	223	
			7	230	
			8	230	
			9	230	
			10	230	
	VII-3	2,277	1	229	
			2	229	
			3	229	
			4	229	
			5	224	
			6	221	
			7	229	
			8	229	
			9	229	
			10	229	
	VII-4	2,257	1	227	
			2	227	
			3	227	
			4	227	
			5	222	
			6	219	
			7	227	
			8	227	
			9	227	
			10	227	

※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동일한 전면도로에 인접한 필지에 한하여 허용함.
원칙적으로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합병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분할만 허용함.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	I-1(1)~1(7), 2(1)~2(3)	용 도	허 용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3m(대1-7, 대2-40, 대2-116, 중1-4, 중2-928, 중2-929, 중2-930, 중2-931, 중2-932호변)			
	I-3, 4, 5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3m			
	I-7, 8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대로1-7호선변 : 6m 도시계획도로변 : 3m(I-7-2만 적용) ○ I-8블럭 : 3m, 북측변 20m			
	I-9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	I-9~13 (목재단지)	용 도	허 용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주1)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내 : 공공조경 3m ○교차로가각부 : 공개공지 5m	
	I-14(1),14(2)	용 도	허 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변 : 3m(단, 대2-29호선변 : 6m)	

- 주1) 공장·창고용도에 한하여 70% 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I	II- 1, 2, 3, 4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자동차영업소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건축한계선		○2m, 광로3-3호변 : 5m	
		II-5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2m, 광로3-3호변 : 5m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II	III- 1~6, 8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형 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3m, 대로1-7호변: 6m ○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3m, 남북측 5m, R=12.5m	
	III- 7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형 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중봉로변 : 공공조경 6m, 건축한계선 15m ○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대로1-7호변 : 건축한계선 6m ○ 중로2-1호변 : 건축한계선 3m			

■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V	IV-1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건축한계선		○ 3m	

■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	V-1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형 태	○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을 설치할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	V-2, 3, 5 (주차장)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차장(단,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형 태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을 설치할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	V-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형 태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을 설치할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북측 청라경계부 건축한계선 : 20m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II	VII-K,M 1~4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단, 획지당 1세대에 한하여 지하층 및 1층 외에 입지하는 경우만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한계선	○ 도시계획도로변 : 전면공지 1m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대로1-7호변: 6m ○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3m, 남북측 5m, R=12.5m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24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686	13	집산도로	166	경서동 372-6번지	대로1-66호 선	일반도로	-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중로 3-686	○도로 신설 -L=166m, B=13m	· 산업단지 조성 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현황도로 를 정비·확폭하여 진입도로 개설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2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03	20	집산 도로	614	대 2-61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	국고15-760 (15.10.27)	-
변경	중로	1	503	20 (20*24)	집산 도로	673 (지구내:614, 지구외:59)	대 2-61	대 3-104	일반 도로	-	국고15-760 (15.10.27)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1-503	중로 1-503	○도로 변경 -폭원:20m→20m(20~24m) -연장:614m→673m(증59m)	• 인천검단지구 내 중로1-503호선과 지구 외 대로3-104호선을 연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 - 3호

폐기 및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및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9.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국장

1. 폐기 및 등록 사유

- 2019. 7. 1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9년 12월 23일


3. 폐기 및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공인 목록

연번	구분	공인명	종류	규격	폐기 및 등록사유	비고
1	폐기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인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	2.1cm x 2.1cm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2	등록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인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	2.1cm x 2.1cm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3	등록	인천광역시서구의회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인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	2.1cm x 2.1cm	상임위원회 신설	

폐기 공인 인영

공 인 명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인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 공인	
(신조, 개각, 폐기) 사 유	2019. 7. 11.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	
폐기예정년월일	2019년 12월 23일	
폐기대상 공인처리	반납, 폐기 예 정 일 (분실일)	2019년 12월 23일
	폐기대상 공인의 인 영	
비 고		



신조 공인 인영

공 인 명	규격(cm)	공인 인영	비고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인	2.1cm ² × 2.1cm ²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인	2.1cm ² × 2.1cm ²		

